

20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

금년 대비 52.2% 증가한 5,735억원

양희택, 이병화

Summary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 규모

- '15년 복지부 총지출은 '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
- '15년 장애인복지 관련 총예산은 '14년(10,981억원) 대비 52.2%(5,735억원) 증가하였고, 특히,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 958억원, 장애수당 24.3%(2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 9.2%(394억원)로 높은 비율로 증가

□ 2015년도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의 특징

-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장애인연금의 급여 확대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3급 중복장애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 종합적 사정도구에 의한 장애판정체계 개편 및 시범사업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국고 전환

□ 경기도의 대응방안

- 연금급여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동 제도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활동지원 대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서비스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양희택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365kkin@ggwf.or.kr / 031.267.9344

* 이병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bhlee@ggwf.or.kr / 031.267.9346

1. 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15.5조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
- '15년 복지부 총지출은 '14년(46.9조원) 대비 10.7%(5조원 ↑)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보육료 등 9,935억원)을 고려할 경우 12.9% 수준 증가
-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 높은 수준임.

<'15년 정부 전체 · 복지분야 · 복지부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14년(A)	'15년(안)(B)	증감(B-A)	%
○ 정부전체 총지출(a)		355.8	376.0	20.2	5.7
○ 복지분야 총지출(b)		106.4	115.5	9.1	8.6
○ 복지부 총지출(c)		46.9	51.9	5.0	10.7
· 복지부 비율	c/a	13.2%	13.8%		
	c/b	44.1%	44.9%		

2. 1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¹⁾ 규모

- '15년 장애인복지 관련 총예산은 '14년(10,981억원) 대비 52.2%(5,735억원) 증가하였고, 특히, 신규 사업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 958억원, 장애수당 24.3%(257억원), 장애인활동지원 9.2%(394억원)로 높은 비율로 증가
- 장애인연금 : ('14) 4,660 → ('15) 5,618억원(958억원, 20.6%)
- 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 등) : ('14) 1,056 → ('15) 1,313억원(257억원, 24.3%)
- 장애인활동지원 : ('14) 4,285 → ('15) 4,679억원(394억원, 9.2%)
- 장애아동가족지원 : ('14) 725 → ('15) 757억원(32억원, 4.4%)
-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 ('14) 235 → ('15) 264억원(29억원, 12.5%)

1) 취약계층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을 선별하여 총액을 나타냄. 구체적 예산내역은 부록을 참고.

- 장애인판정체계개편 시범사업 추진(신규) : 11억원
 - ※ 장애인 욕구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장애등급제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13개 지자체, 공단 5개 지사)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신규) : ('15) 4,085억원(순증)
 - ※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3. 1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 특징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 기초연금시행에 따라 '14.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지급액도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월20만원~2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음. 장애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1만원 상향하여 지급함.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기존 2급까지 제공했던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 중복지장애까지 확대하였고, 지원예산 장애인은 약 4천명 정도임.
- 장애인판정체계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장애인판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경제적 환경 등 종합적 사정 도구를 통한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13개 지자체, 공단 5개 지사에 계획됨.
-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국고 전환 : 지방분권화 된 이후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주시설의 복지 혜택의 불평등과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의 야기해 왔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국고로 전환함.

4.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안)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 장애인의 소득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연금법의 제정과 실행에 따라 유사한 제도 적용 차원에서 소득하위 70%의 대상에게 기초급여가 인상되었음(20만원). 연금급여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기도의 경우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에 동 제도의 추가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활동지원 장애등급을 3급 중복장애까지 확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자립생활 모델의 이념에 따라 제도화 된 활동보조서비스가 진정한 장애인의 자립위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3급 혹은 그 이상의 등급으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최근 장애인계에서는 활동보조신청 등급을 기존 1·2등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활동지원법 개정 움직임이 있음.

경기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변화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의학적 진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7년 중증장애인 재심사 등의 도입과 몇 차례의 장애인판정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과제를 진행해 왔음. 판정체계 개편은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중요한 사업임. 따라서 차기연도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 서비스기관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부록>

<'15년 장애인복지 지출예산의 주요 항목>

(단위 : 억원)

구 분	'14년(a)	'15년(안)(b)	'14년 대비		비고
			b-a	%	
총예산 ¹⁾	10,981	16,716	5,735	52.2	
장애인연금	4,660	5,618	958	20.6	
장애수당	1,056	1,313	257	24.3	3→4만원
장애인활동지원	4,285	4,679	394	9.2	3급 중복확대
활동지원 급여	4,076	4,470	394	9.7	
중증장애인응급안전 시스템구축운영	63	63	-	-	
기타	146	146	-	-	
장애아동가족지원	725	757	32	4.4	
발달재활서비스	608	652	44	7.2	
언어발달지원	19	19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71	80	9	12.7	
장애아동부모지원기관 운영	5	5	-	-	
발달장애인지원	21	-	-	-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으로 이동
기타	1	1	-	-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	235	264	29	12.4	
장애등급심사	198	203	5	2.5	
저소득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	5	5	-	-	
장애등록제도개선연구 등	1	1	-	-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21	34	13	61.9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9	9	-	-	
장애인판정체계 개편시범사업(신규)	-	11	-	100	
기타	1	1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신규)	-	4,085	-	100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주1) 취약계층 예산 중 장애관련 예산만 선별함.